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4. 5. 22.(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불참위원 : 없음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23차, 제24차, 제25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광주영어FM의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 (2024-26-092)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가> “광주영어FM의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광주영어FM의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광주영어 FM방송국의 영어프로그램 편성 관련 재허가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입니다. 기존 영어프로그램 80% 이상 편성을 7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향후 영어방송의 영어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 조건 변경은 서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광주영어FM방송국의 재허가 조건 변경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경과입니다. 영어FM은 국내 거주 외국과 방문 외국인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서울, 부산, 광주에 허가되었고, 2013년부터는 외국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영어방송에서 영어 위주 다국어방송으로 편성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재허가 시 80% 이상 영어프로그램 편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으며, 지난 5월에 광주영어FM이 조건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4> 검토사항입니다. <가> 영어프로그램 최소 편성비율입니다. 재허가 조건으로 80% 이상 영어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지역 외국인 구성 및 방송언어 비율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등록외국인 비율은 영어권 5.3%, 중국인 20.2%, 베트남 20.2%, 태국 11.1%, 우즈베키스탄 10.2% 등입니다. 현재 광주영어FM 언어권별 편성 비율은 영어 88.1%, 중국어 9.5%, 베트남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광주영어FM 제안 내용입니다. 광주지역 외국인의 언어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편성을 축소하고, 영어 외 다국어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영어프로그램 최소 편성 비율은 기존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광주영어FM은 영어프로그램 73%, 중국어 19%, 베트남어 8%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영어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 하향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통해 지역 외국인의 다국어방송 수요를 충족하고 공적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가된 방송사항, 기존 청취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광주영어FM이 영어프로그램을 70% 이상 편성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광주영어방송과 동일한 조건이 부산영어방송에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영어방송과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검토과정에서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 부산영어방송 측에도 실무적으로 협의했는데 일단 부산영어방송은 영어프로그램 80% 이상 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광주영어FM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 영어 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등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 영어 외에도 향후 다른 언어의 추가도 가능합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언어에 대한 제한은 없는 부분이고, 일단 광주영어FM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내 고려인 마을이 있고, 고려인마을 거주인들을 고려해서 러시아어 프로그램까지도 편성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광주영어FM방송의 공적재원 투입의 경우 재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25억원 정도 되며, 광주광역시 출연금으로 23억원 그리고 광고협찬으로 2억원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광역시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재원을 대고 있네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질문은 더 이상 없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영어FM은 올해 1월 말에 재허가를 받았고 영어프로그램을 80% 이상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영어FM은 광주지역 외국인의 언어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영어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을 기존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주영어FM의 언어별 방송편성비율이 광주광역시 거주 외국인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영어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영어프로그램을 70% 이상 편성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사무처 원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이 안건은 다양한 언어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광주영어FM방송국의 영어 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청취권과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나. 재난방송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4-26-93~106)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재난방송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훈식 재난방송관리팀장

- <안건 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향후 재난방송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1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조사배경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1년 3분기부터 '23년 4분기까지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주요경과사항과 뒤페이지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본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가> 재난방송 누락과 관련한 실시현황은 (주)엠비씨경남 등 7개사가 재난방송 요청을 받았으나,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난방송 세부 실시결과 및 방송사 제출사유 요약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의견입니다. (재)광주영어방송재단과 (주)전주방송은 자사의 방송장비 오류로 인해 재난방송을 누락했음을 인정하며, 이후 방송장비 사전점검 및 근무자 교육 강화를 통해 재난방송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엠비씨경남과 (재)CBS는 유사한 내용의 재난방송 요청문 등이 수신됨에 따라 근무자가 오인하여 방송을 누락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재)CBS, (재)원음방송, (재)국악방송은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동일한 요청문이 2회 수신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반복 방송에 따른 청취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근무자가 1회만 방송한 것임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극동방송은 재난방송 요청문 수신 시 주로 휴대전화 문자 알림을 통해 수신 사실을 인지해왔으나, 당시 SKT망 장애로 인해 휴대전화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해 재난방송을 누락했으며, 이후 재난방송 알림 경고등 설치, 직원 교육 등 조치를 한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위법성 검토입니다. (재)광주영어방송재단과 (주)전주방송이 자사의 방송장비 오류로 인해, 그리고 (주)엠비씨경남과 (재)CBS가 근무자 부주의 및 오인 등으로 인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행위는 방송사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 의무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어 재난방송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한 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그리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엠비씨경남이 재난방송 요청문 수신 후 자사의 2개 방송구역, 즉 창원과 진주본부에서 각각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행위 횟수에 대하여는 법 제40조 제2항이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엠비씨경남이 1회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재)원음방송과 (재)국악방송이 "호우정보 변경"과 관련한 동일한 재난방송 요청문을 1분 간격의 짧은 시간 내에 2회 수신 후 종합하여 1회 방송한 행위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재난 핵심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대로 각각 방송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한 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재난방송 실시기준 제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CBS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간격 단축시행 안내' 관련 동일한 재난방송 요청문을 8분 간격의 짧은 시간 내에 2회 수신 후 종합하여 1회 방송한 행위는 긴급한 재난상황이 아닌 점,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단순 안내인 점, 음성방송인 라디오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극동방송이 재난방송 요청문을 수신하는 4가지 방법, 즉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 휴대전화 문자, 팩스, 자동음성송출기 중 휴대전화 문자 알림의 수신 장애로 인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4가지 방법 모두를 통해 재난방송 요청문 수신여부를 상시 확인할 의무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어 재난방송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한 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재난방송 실시기준 제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요청받은 내용과 다르게 방송한 사안과 관련한 실시현황입니다. (주)제주방송 등 9개사는 재난방송 요청을 받았으나 유사한 다른 요청문의 내용을 방송하거나 요청문 내용 중 재난 핵심정보를 일부 다르게 방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페이지 재난방송 세부 실시결과와 방송사 제출사유 요약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사업자 의견입니다. (주)제주방송 등 9개사는 근무자의 부주의·오인 등으로 인해 요청받은 내용과 다르게 방송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무자 교육,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법성 검토입니다. (주)제주방송 등 9개사가 근무자의 부주의·오인 등으로 인해 유사한 다른 내용의 요청문을 방송하거나 재난방송 요청문 내용 중 재난 규모나 발생지역 등 재난 핵심정보를 일부 다르게 방송한 행위는 방송사의 근무자 교육 등 통상적인 관리 의무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어 재난방송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한 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그리고 재난방송 실시기준 제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8페이지 과태료 처분(안)입니다. 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재)광주영어방송재단 등 14개 사에 대해 법 제48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반건수당 각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1,500만 원이며, 부주의·오류 여부, 그리고 시정·해소 노력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재난방송 누락과 관련하여 광주영어방송 등 7개 방송사업자의 10건 위반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문 내용과 다르게 방송을 한 제주방송 등 9개사의 12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75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6월 중으로 방송사업자별로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이와는 별개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불편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내용입니다. 재난방송 법규위반 전체 14개 방송사업자의 22건 위반에 대해 총 1억 6,5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별 위반 세부내역과 제출의견(요약본)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먼저 한두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반사항이지요? 2021년도 3분기, 또 2022년도 4분기, 이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었지요?

○ 이훈식 재난방송관리팀장

- 과태료 업무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 과태료 위반건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데 그간의 업무가 즉시즉시 처리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방송사 법규위반을 적발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재난방송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하고 있습니까?

○ 이훈식 재난방송관리팀장

- 그렇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4항에서는 방심위가 재난방송 실시결과 여부를 확인해서 방통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다음부터는 방심위와 협조해서 통보를 빨리 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하고 처분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훈식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조사 이후 현재까지는 재난방송 법규위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 이훈식 재난방송관리팀장

- 통보가 2024년 1월 1일부터 최종 와 있는 3월 말까지의 내용 중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 재난방송 실시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재난방송 법규 위반내용은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실시한 경우라도 재난 핵심정보, 즉 재난규모, 발생지역 등을 일부 다르게 방송하거나 해당 요청문이 아닌 다른 요청문을 방송한 경우입니다. 재난방송은 국민들에게 재난현황, 대피장소, 행동요령 등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주로 근무자의 부주의나 방송 장비 오류 등으로 인해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런 재난방송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방송사의 주장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시정·해소 노력,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무처 원안대로 과태료 액수는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번에 방송사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재난방송 이야기가 그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같은 경우 하단에 재난방송을 글자로 표기하면 되지만 라디오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2층에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있지요?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 또는 부족하게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실제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재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의 AI 모니터링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방송을 제때 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로 알린다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방송사도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실제로 재난방송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훈식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알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특히 방송사별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매체 특성에 따라 앞으로도 재난방송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무처 의견을 쪽 이야기했는데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2021년 3분기부터의 위반사항을 2024년 2분기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방송과 관련된 규제를 하는 것이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훈식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알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다.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24-26-107)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다>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경과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201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평가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평가지표 개선 연구반 및 사업자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평가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불편 해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평가 대상 관련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1년간이며, 대상 사업자는 기간·부가통신·디지털플랫폼 등 13개 분야 총 46개 사업자입니다. 대상 사업자 세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통신 분야는 이동통신·초고속 인터넷·알뜰폰사업자 등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21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10순위 이내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알뜰폰 분야에서 순위 변경에 따라 (주)큰사람이 제외되고 (주)아이즈비전이 새로이 추가되어 평가 대상 사업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가통신 분야는 월간 이용자 수(1,000만명 이상) 및 상위 사업자 기준으로 앱마켓, 검색, SNS, OTT·개인방송, 쇼핑 분야 등 22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사항은 하단 OTT·개인방송 분야에서 트위치가 방송 종료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음 페이지 쇼핑 분야에서 알리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외 전년 대비 평가 대상 변화는 없습니다. 부가통신 분야 세부 평가 대상별 내역은 현재 페이지 및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사업자 분야 평가 대상은 이용자 수, 운영 서비스, 이용자 인식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3개사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되, 고객센터 최고책임자 면담, 고객의 소리 시스템 확인 등 현장평가를 병행하고,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 실질적인 이용자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의 경우에는 시범평가 기간인 금년까지는 기존 서비스 분야별 평가와 디지털플랫폼 평가를 병행하고 내년에는 개별 서비스 평가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범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는 사업자의 평가업무 이해 제고와 업무개선 등 평가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년간 시범평가 대상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먼저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등 5개 분야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금번 평가계획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가항목 개선 관련입니다. 전 분야 공통사항으로 행정처분 내역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사 등 자격증 취득 지원 평가 기준을 대리점 및 판매점 직원 지원에서 통신사의 관리 범주에

포함되는 대리점 직원 지원으로 한정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부가통신 및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복 평가항목 통폐합, 해당 서비스와 무관한 평가항목 삭제 등을 통해 평가 대상자의 평가 부담을 낮추고 분쟁조정 결과 반영 노력 등 평가 필요지표를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평가지표 개선 내역과 주요 평가항목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간입니다. <마> 평가업무 개선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 및 평가결과 '보통' 사업자 이하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속 운영하고, '23년도에 시범평가에 해당되어 서면평가만 진행하였던 디지털플랫폼사업자는 올해부터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 총 20인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별·대상 사업자별 4개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여 소위원회가 소관 분야별 종합점수를 1차로 산출하고 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점수 및 평가등급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 활용입니다. 평가결과 공개 관련입니다. 각 사업자별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범평가 사업자의 경우 평가 결과를 비공개 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환류 관련해서는 매우우수 등급 중 최고득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 및 미흡사항 안내를 통해 업무개선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 정입니다. 5월 말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11월에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번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에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포함됐습니까? 알리만 포함 되고 테무(Temu)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기준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용자 규모와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통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월간 이용자 1,000만명이나 아니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 또는 이용자 수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리는 거의 이용자 수가 900만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금번 시범평가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테무는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용자 수는 500만 정도에 육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테무도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는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지표도 많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셨습니까?

○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지난 1월 평가대상 사업자 평가위원 및 방통위 담당자가 참여한 평가지표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4월까지 총 10회 연구반 회의를 하고,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중복 평가 항목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지표는 삭제하는 평가지표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저는 더 질문은 없고, 위원장님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 **김홍일 위원장**

- 없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보호정책은 엄격한 사후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교육이나 평가를 통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그간 평가방법이나 절차를 꾸준히 개선했고,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 대상 사업자를 확대 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과 컨설팅도 시행하는 등 평가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평가계획에서는 해외 직구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평가대상 사업자로 신규 선정하였고, 2025년도부터 행정처분 내역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이 적용되는 등 평가항목이 개선되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자들 역시 이번 평가를 통해 이용자 보호업무를 스스로 진단하고 부족한 점을 발견·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무처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앞으로 사무처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시 국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등이 적극 개선 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충실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기만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4-26-108~111)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기만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기만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조사 경위입니다.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한 실태점검 개요입니다. 통신 4개사 및 MSO 5개사 등 총 9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스마트폰 + 인터넷 + 유료방송 등의 결합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행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행위입니다. 3쪽입니다.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사업자별 위반 현황입니다. 전체 위반율은 42.7% 수준이었으며, 사업자별 위반율은 KT(46.8%), SKT(45.9%), LGU+(36.9%), SKB(3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위반 현황은 <표 1>과 <표 2>, <표 3>, <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사실조사 필요성입니다. '20년 조사보다 허위·과장·기만광고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체 위반율이 4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MSO 5개사는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시적 광고가 이뤄지고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약 9.3%에 불과한 점, 그리고 조사대상 건수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조사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4>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KT, LGU+, SKB, SKT 등 총 4개 사업자입니다. 조사대상 기간 및 위반 기간은 '23년 7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4년 3월 4일 사실조사 결과 보고를 완료하였고, '24년 3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업자별 시정조치(안)를 통지하고,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조사 현황입니다. 사실조사는 대리점 등 매장의 광고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조사,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판매처의 광고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광고 관련 정책업무처리 실태 확인 등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오프라인 조사 시 1,427건, 온라인 조사 시 194건 등 총 1,621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조사현황은 <표 5>와 <표 6>, <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입니다. 온·오프라인 사실조사를 통해 총 1,621건의 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465건의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32.7%), KT(29.9%), SKB(24.5%), LGU+(23.3%)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위반율은 오프라인 1,427건 중 33건, 온라인 194건 중 99건으로 온라인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위반율 및 위반현황은 <표 8>와 <표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오프라인 조사결과입니다. 총 1,427건의 오프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기만광고는 366건으로 위반율은 25.6%였습니다. 사업자 위반율은 SKT가 30.1%로 가장 높았고, SKB가 28.2%, KT가 28.1%, LGU+가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유형별 위반율은 기만광고가 23.4%, 허위광고가 4.5%, 과장광고가 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위반현황은 <표 10>과 <표 1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온라인 조사 결과입니다. 총 194건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기만광고는 99건으로 위반율은

51%였습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LGU+가 68.4%, SKT가 55.5%, KT가 46.3%, SKB가 1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 위반율은 기만광고가 47.4%, 허위광고가 6.7%, 과장광고가 1% 순입니다. 자세한 위반현황은 <표 12>와 <표 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들이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지역 최대 현금 지원’, ‘인터넷+TV 최대지원’, ‘인터넷무료’, ‘지원금 최대’ 등 허위·과장광고하거나 결합상품 구성이나 할인율·할인규모·할인내용·약정기간·제휴카드명·전월실적 미표시 등 주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을 일부누락·축소·은폐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비해 비용절감 및 편익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별표 4] 5호 바목,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 제1항 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6쪽 시정조치(안)입니다. 시정명령(안)입니다.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금지행위의 중지,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부과 상한액입니다. 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 중 결합판매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직·간접적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7쪽 상단입니다. 피심인 SKT의 위반율이 32.7%로 높고,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기준금액을 6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반율을 고려하여 SKT에 대해서는 6억 원, KT에 대해서는 5억 4,862만 원, SKB에 대해서는 4억 4,954만 원, LGU+에 대해서는 4억 2,752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최종과징금 산정입니다. 최종과징금 산정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SKT에 대해서는 4억 2,000만 원, KT에 대해서는 4억 3,800만 원, SKB에 대해서는 3억 1,400만 원, LGU+에 대해서는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형사고발입니다. 피심인들이 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 제99조(벌칙)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4년 5월 중에 피심인에게 심의·의결서를 통보하고, 6월과 8월 사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3/100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 과징금이지요?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매출액과 위반행위 사이에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조사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실제로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서 통신사업자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입증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간 2015년과 2020년도에도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허위·과장·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위반 사례와 비교해 보고 위반율을 고려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서 정액과징금 내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매출액 3%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도리어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에 비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5년도, 2020년도에 결국 지금처럼 위반행위와 매출액 관련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져서 정액과징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매출액 3% 그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했던 예는 없습니까?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위·과장·기만광고로 시정 조치한 것이 2013년 방통위 출범이후 2015년도와 2020년도 총 3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허위·과장·기만광고 근절을 위한 방통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오늘 의결해 주셔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업무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허위·과장·기만광고라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통신 4사 및 MSO 5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신 4사의 경우에는 위반율이 여전히 높고, 또한 허위·과장광고보다 기만광고로 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 피심인들이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장하거나 주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을 일부 누락·축소·은폐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가 인정되었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 바목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 제1항 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피심인 모두에게 법령에서 정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광고 피해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견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심인들이 2023년도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우수 내지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점,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있고 상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문을 참고해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용자를 기망하고 현혹하는 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의 적절한 대책 마련과 함께 주기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시정조치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의 근절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있어서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가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이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등 제반 후속조치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소현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4월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월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입니다. 지역MBC는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역민방은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2%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3.2%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해 5~6월간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위원회 의결과 관보 게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지역방송 상황이 어렵고, 또 지역방송을 통한 외주제작 진흥정책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번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지요?

○ 황소현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영구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 현 방송기반국장

- 방통위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방송사 애로를 위해서 영구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제 1차적 수혜대상자인 외주제작사, 그리고 관계 부처인 문체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 범정부 차원으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완화 내지 폐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지역민방은 3.2%에서 2.6%로, 그리고 지역MBC는 20%에서 14% 비율로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

○ 황소현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런 비율을 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더 밑으로 하향 조정은 안 되는지 설명해 보시지요.

○ 황소현 편성평가정책과장

- 지역방송 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직전의 비율 대비 완화된 비율만큼 비율을 완화하여 현재의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외주제작사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문체부와 다 상의한 내용이지요?

○ 황소현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추진방안의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 지역방송 순수 외주제작 편성비율 완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이 방안에 근거하여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 제작 촉진을 위해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지역방송의 자체제작이 증가하여 지역성이 잘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개정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앞으로 행정예고를 거쳐야 할 텐데 예고기간에 접수되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고시 개정까지의 절차를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8분 폐회 】